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소규모 통·반을 통·폐합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통장의 연임규정 개선, 동 행정예 비협조적인 통·반장의 해촉근거 신설 등으로 통·반장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의 획정기준 조정 (안 제3조)
 - 통의 반수를 3개반~10개반 → 5개반 이상으로 조정
 - 반내 세대수를 20세대~100세대 → 20세대 이상으로 조정
-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 (안 제5조 제2항 제2호)
 - 반원들이 직접선출 → 주민 또는 통장이 추천
- 통장임기 제한 (안 제5조 제2항 제3호)
 -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가능
- 통·반장 해촉사유 추가 (안 제5조 제4항 제5호)
 - 동 행정예 비협조적인 통·반장의 직권해촉 규정신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통·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연임규정 개선과 동 행정예 비협조적인 통·반장의 해촉근거를 추가하는 등으로 통·반장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통·반의 획정기준 조정은

현재 1개통의 반수는 최소 3개반에서 최대 10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개반 이상으로 조정하고

1개반내 세대수는 최소 20세대에서 최대10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상한선을 철폐한 것은

대규모 APT건립 등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거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통·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반장 수의 감축으로 이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은

반상회 등 반원 모임이 침체되고, 반장직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떨어져 반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토록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됨.

□ 통장의 임기에 연임제한을 둔 것은

현재 통장의 임기는 한번 위촉되면 연령제한을 받는 65세까지 계속적으로 할수 있어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의욕저하로 활동성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장의 임기를 개정안대로 제한할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수의 통장을 동일 년도내에 교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반장의 해촉사유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때」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통·반장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2008. 2. 1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⑤ (생략)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들수있다.